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나7279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나727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2158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장근석

피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장영돈, 천혜진, 최유진

피고, 항소심 당사자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김명진, 유동승

변론종결 2022. 12. 23.

판결선고 2023. 2. 1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215828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9,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3,777,692원 및 그 중 135,252,447원에 대하여는 2021. 12. 14.부터, 6,967,437원에 대하여는 2022.

7. 20.부터, 나머지 1,557,808원에 대하여는 2022. 12. 10.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위적 피고' 또는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135,763,646원 및 그 중 130,252,447원에 대하여는 2021.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3.1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예비적 피고' 또는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43,77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2.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원금을 확장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산점은 감축하되 지연손해금률은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기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 보증공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1심판결의 확정기 차단되고 이 사건 소송은 전체로서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2019. 2. 28.”을 “2018. 2. 2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11, 13 내지 15, 을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보증약관(을가1-2) 제22조 제7호에 정한 특약주채무자인 C이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7호,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보증금액 1억 3,600만 원 전액의 범위에서 면책된다.

① 이 사건 보증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면책사항) 보증회사는 특약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약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제23조(면책범위) 보증회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한다.

1. 제2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특약보증금액 전액

② C, E 등이 공모하여, C은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역할을, E는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수법의 사기행위를 하였다며 기소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245, 2022고단2193(병합)]에서, E는 징역 2년을,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③ 위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고(을가13-2), E도 임대인의 지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을가13-1).

따라서 보증채무이행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 보증공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9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보험약관(갑10)과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운영에 대한 부속업무협정(갑9; 이하 ‘이 사건 부속업무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아래의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아래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부당압박, 강박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아래 ‘가’목에서 정해진 금액에서 ‘나’목에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피보험 임차권으로 담보되는 아래 (가) 내지 (마) 금액의 합계

(가) 피보험 임차권 취득시의 전월세금대출 채권 원금

(나) 그에 대한 이자

(다) 연체 수수료

(라) 강제집행, 채무자와의 합의, 기타 적법한 전월세자금대출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비용

(마) 정착물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금액

나. 피보험자가 회수한 전월세자금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

<이 사건 부속업무협정>

제4조(대출 운용 기준)

① 협정서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대출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어야 한다. 단,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가능함.

제5조(보험가입금액)

① “업무협정서” 제4조(보험계약 방법)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을 위 제4조(대출운용기준) 제1항의 대출금의 110%로 정한다.

② C은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년 금제436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③ 2021. 12. 13.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잔액은 148,786,260원(= 대출원금 잔액 135,252,447원 + 지연손해금 13,533,813원)이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은 C과 E 사이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한 사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이 허위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를 위반(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참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을 '대출금'의 110%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4,960만 원(= 이 사건 대출금 1억 3,600만 원 × 110%)이 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속업무협정 제5조 제1항의 '대출금'은 '대출원금잔액'을 의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금'인 1억 3,600만 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은 2021. 12. 13. 기준 148,786,260원(= 대출원금 잔액 135,252,447원 + 지연손해금 13,533,813원)이나, 원고가 2021. 12. 13. 기준하여 공제를 자인하는 C의 공탁금 5,000,000원¹⁾을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면 지연손해금은 8,533,813원(= 13,533,813원 - 5,000,000원)이 되어, 결국 원고의 자인에 따른 2021. 12. 13. 기준 대출원리금은 143,786,260원(= 135,252,447원 + 8,533,813원)이 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인 1억 4,9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2021. 12. 13. 기준 대출원리금 중 143,777,692원(= 대출원금 135,252,447원 + 2021. 12.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주장 금액 13,525,245원²⁾ - 공탁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대출원리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8,525,245원(= 13,525,245원 - 5,000,000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데,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중 6,967,437원에 대하여는 2022.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B에 위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연손해금 1,557,808원(= 8,525,245원 - 6,967,43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2022.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지연손해금 1,557,808원에 대한 위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 1억 4,9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143,777,6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5,252,447원에 대하여는 2021. 12. 14.부터, 지연손해금 8,525,245원(= 143,777,692원 - 135,252,447원) 중 6,967,43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2.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7. 20.부터, 나머지 지연손해금 1,557,808원(= 8,525,245원 - 6,967,43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2022.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1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위적 피고 보증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판사 권순호

1)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충당에 관한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충당한다.

2) 원고 주장 취지에 비추어 위 금액으로 보인다.